

## 영주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9

제출년월일 : 2000. 4.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개정이유

지방세수 확보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세 개인균등 할의 세율을 조정하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주행세 신설(안 제3조 및 40조의2 내지 제40조의5)

- 지방세법 제196조의16내지 제196조의18 등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 규정

#### 나.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제9조)

- 세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삭제되어 관련조항 개정

#### 다. 주민세 균등 할 세율조정(안 제20조제1항)

-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동지역 : 3,000원 → 4,500원
  - 읍면지역 : 2,000원 → 3,000원

#### 라.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개선(안 제21조, 제22조의2)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77조의4의 규정(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이 개정되어 2001. 5. 1부터 시행되어 관련조항 개정

#### 마.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선(안 제39조)

- 자동차가 매매될 경우 양수자가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96조의8의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 개정
-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금액 상향조정  
1,000원미만 → 2,000원미만

바. 농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안 제46조)

- 지방세법 제210조의 농지세 세율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사.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안 제60조)

- 지방세법 제233조의6 제3항 후단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아.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 신설(안 부칙 제3항)

-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이 지방세법 부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표준안 (1999. 12. 22 도세정 13400-2374) 공문사본 1부.

나. 주민세(개인균등할)세율조정계획(2000. 1. 27 세무13400-167) 사본 1부

다. 관련법령(발췌) 1부.

라. 입법예고 결과 1부

## 영주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증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주행세

제9조의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증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한다

- 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증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한한다)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증 동 지역 “3,000원”을 “4,500원”으로, 읍면지역 “2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증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를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증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

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 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 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

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절의2(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절의2 주행세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 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천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72만원+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672만원+4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40

제6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39조제3항·제4항,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 제46조,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차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  
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  
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 목)①&lt;생략&gt;</p> <p>②&lt;생략&gt;</p> <p>1.~3.&lt;생략&gt;</p> <p><u>&lt;신 설&gt;</u></p> <p>4. 농지세</p> <p>5. 담배소비세</p> <p>6. 도축세</p> <p>7. 종합토지세</p> <p>③&lt;생략&gt;</p> <p>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u>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u>  <u>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u></p>	<p>제3조(세 목)①&lt;현행과 같음&gt;</p> <p>②&lt;현행과 같음&gt;</p> <p>1.~3.&lt;현행과 같음&gt;</p> <p><u>4. 주행세</u></p> <p>5. .....</p> <p>6. .....</p> <p>7. .....</p> <p>8. .....</p> <p>③&lt;현행과 같음&gt;</p> <p>제9조(시세심의위원회 등)  <u>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u></p> <p><u>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u></p>

현 행	개 정 안
<p><u>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u>  <u>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u></p> <p><u>③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u>  <u>인을 포함하여 18인 이상 30인 이하의</u>  <u>위원회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u>  <u>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u></p>	<p><u>③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u>  <u>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u>  <u>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u>  <u>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서 호선하며,</u>  <u>위원은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과세</u>  <u>표준심의위원회에 한하다)과 시행규</u>  <u>칙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u>  <u>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u>④&lt;생략&gt;</u></p> <p><u>⑤&lt;생략&gt;</u></p> <p><u>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u>  <u>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u>  <u>정한다.</u></p> <p>제20조(세율)① 균등 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지역 : <u>3,000원</u></li> <li>· 읍면지역 : <u>2,000원</u></li> </ul> </li> <li>나. &lt;생략&gt;</li> </ol> </li> </ol>	<p><u>④&lt;현행과 같음&gt;</u></p> <p><u>⑤&lt;현행과 같음&gt;</u></p> <p><u>⑥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u>  <u>위원회-----</u>  <u>-----</u></p> <p>제20조(세율)①-----  <u>-----</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지역 : <u>4,500원</u></li> <li>· 읍면지역 : <u>3,000원</u></li> </ul> </li> <li>나. &lt;현행과 같음&gt;</li> </ol> </li> </ol>



현 행	개 경 안
<신 설>	<p><u>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u>  <u>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u>  <u>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u>  <u>징수한다.</u></p> <p><u>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u>  <u>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u>  <u>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u>  <u>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u>  <u>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u>  <u>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시장에</u>  <u>게 납부하여야 한다.</u></p> <p><u>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u>  <u>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u>  <u>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u>  <u>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u>  <u>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u>  <u>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u>  <u>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u>  <u>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u></p> <p><u>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u>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u>  <u>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u></p>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생 략> ②<생 략> <신 설>	<p>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 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 할을 환부하여야 한다.</p> <p>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 하는 경우 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 한 것으로 본다.</p>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lt;현행과 같음&gt; ②&lt;현행과 같음&gt;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p>

현 행	개 정 안
	<p><u>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신 설>	제3절의2 주행세
<신 설>	<p>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회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p>
<신 설>	<p>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32로 한다.</p> <p>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  <u>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u>  <u>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u>  <u>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u>  <u>신고함과 동시에 시금고에 납부하여</u>  <u>야 한다.</u></p> <p>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u>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u>  <u>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u>  <u>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u></p> <p>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u>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u>  <u>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u>  <u>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u>  <u>고필증사본</u></p>
<신 설>	<p>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p> <p>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u>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u>  <u>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u>  <u>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u></p> <p>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  <u>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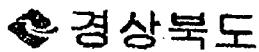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세율) 농지 세의 세액은 과세 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p>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u>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u>  <u>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통합에</u>  <u>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u>  <u>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u>  <u>통보하여야 한다.</u></p> <p>제46조(세율)-----  -----  -----  -----.</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400만원 이하</td> <td>100분의3</td> </tr> <tr> <td>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td> <td>12만원+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16</td> </tr> <tr> <td>1,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td> <td>108만원+1,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27</td> </tr> <tr> <td>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513만원+2,5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8</td> </tr> <tr> <td>5,000만원 초과</td> <td>1,463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50</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100분의3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108만원+1,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13만원+2,5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 초과	1,463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400만원 이하</td> <td>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td> </tr> <tr> <td>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td> <td>12만원+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 <td>72만원+1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20</td> </tr> <tr> <td>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td> <td>672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0</td> </tr> <tr> <td>8천만원 초과</td> <td>1천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1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100분의3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108만원+1,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13만원+2,5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 초과	1,463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1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p>제60조(신고납부 등)</p> <p>① ~ ② &lt;생략&gt;</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수의 무자는 정수 한 담배소비세를</p>	<p>제60조(신고납부 등)</p> <p>① ~ 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p>																								

현 행	개 정 안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 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 ----- -----
<u>&lt;후단신설&gt;</u>	<u>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 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u>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118 383  
1685

## 관인생략

\*위대한 경복 힘과 뛰는 300만\*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053)950-2311 /FAX (053)950-2319  
 세정회계과 과장 박정규 사무관 박현규 담당자 최현찬

문서번호 세정13400-10073

시행일자 2000.01.19 (30년)

공개여부 공개

발 읍 시장,군수

합 조 지방세담당과장

선 법	세무과장	지 시	
접 수	일자	2000. 1. 18	
	시간		
	번호	230	
	처리 과	세 1 4	
	담당자	(총무과)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시.군세 조례증 개경조례(안) 수정사항 통보

세정 13400-2374('99. 12. 22)호로 통보한 시.군세 조례 개정(안) 중 제40조의4(신고납부) 제2호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었음을 통보하니 조례 개정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전 :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관세 납세 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나. 수정후 :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고 첨증 사본. 관

정기필. 등,

경상북도지사

전결 세정회계과장 *박정규*

10

## 관인생략

## 경상북도

702-702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053) 950-2311 / 전송(053) 950-2319  
 세정회계과 과장 박정근 사무관 박현규 담당자 최현찬

문서번호 세정13400 - 10026

시행일자 '99. 12. 22(30년)

(경유)

발음 시장.군수

찰조 지방세담당과장

선 찰	시 장	+7-	지 시
접 수	월 시 간 번호	PP 12. 22 5187	결 재 부 국 장 전 체 리 과 세 무 기 금 당 자 방 세 담 당 과 장
처 리 과	세 무 기 금 당 자 방 세 담 당 과 장	세 무 기 금 당 자 방 세 담 당 과 장	부 장 전 체 리 과 세 무 기 금 당 자 방 세 담 당 과 장
실 사 자			심 사 일

제 62 지방세일반조례증 개정조례(안) 통보

시어쓰는자체  
세무과세개정조례  
199. 12. 22(30년)

-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234('99. 12. 9)호와 관련입니다.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 일반조례증 개정하여  
야 할 사항을 별법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군별로 시행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 일반조례 정비계획 1부

2. 지방세 일반조례증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세정회계과장 박정근

## 地方稅一般條例 整備計劃

慶 尚 北 道

## □ 시·군세 조례

### 1.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규정이 법적근거가 없어 영 제58조에서 삭제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정비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조례에 반영 필요

### 2. 주민세 소득세 할 신고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

- 법 제177조의2, 제177조의4 규정(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 고지)이 개정되어 2001. 5. 1.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개정

### 3.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선에 따른 개정

-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법 제196조의8의 규정이 개정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개정
-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 부정수 금액 상향조정
  - 1,000원 미만 → 2,000원 미만

### 4.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

- 법 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18 등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 조례에 규정

### 5. 농지세 세율 조정에 따른 개정

- 법 제210조의 농지세 세율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6.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개정

- 법 제233조의6제3항 후단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

7.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신설에 따른 개정

-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을 법 부칙에 신설함에 따른 조례정비

## 시(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시(군)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세목)제2항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주행세”로 하며 “제4호 내지 7호”를 “제5호 내지 8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군)세심의위원회”를 “시(군)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시(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시(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세정(재무)과장, 지적과장(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한한다)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군수)이 위촉한다“ 제6항 본문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sup>시</sup>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1조(신고납부)제2항 본문중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를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 본문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2를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 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 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 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소득세 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은 당해 소득세 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군수)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제1항내지 제3항”을 “제1항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인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의 본문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1,000원 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한다

제3절의2를 신설한다

#### 제3절의2 주행세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를 신설한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서본을 신고필증자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세율)본문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72만원+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672만원+4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제60조(신고납부 등) 제3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39조제3항.4항,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 제46조,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군세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조(세목)①(생략)          ②(생략)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p> <p>제15조(시.군세심의위원회)          ① 시.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제3조(세목)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주행세          5.~8.(현행 4.~7.호와 같음)</p> <p>제15조(시(군)세심의위원회 등)          ① 시(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시(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p>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 ④(생략)

## ⑤(생략)

⑥ 위위원회 및 각 부과위위원회의 조직  
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제21조(신고납부)①(생략)

② 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  
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  
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  
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큼

③ 시(군) 세심의위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세정과장,  
지적과장(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한  
한다)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군수)이가 위촉한다

#### ④(현행과 같음)

### ⑤(현행과 같음)

##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 위원회-----

제21주(신고 날짜)①(현해과 강우)

### ③———

-----

<사계>

③ 법인세 할 소득세 할의 납세의무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  
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  
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  
하여 징수한다.

### <신 설>

### ③ 법인세 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④ 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  
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  
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  
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  
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신 설>

제22조의2(소득세 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 할의 납세의무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  
세 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  
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  
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생략)

②(생략)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군수)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 할계산 신청을 하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2,000원 미만-----

제3절의2 주행세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

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  
에서 회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  
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  
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에게 부과한다.

<신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  
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  
의 32로 한다.

<신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  
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  
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  
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  
~~제17조 제17조 제17조~~ 신고불능사본  
세율의 규정에 의한 관세금부과증  
서 또는 부과증서지사본

<신 설>

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 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부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내서를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세율)-----

-----  
-----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u>400만원이하</u>	<u>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u>	<u>400만원이하</u>	<u>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u>
<u>400만원초과</u>	<u>12만원+400만원초과</u>	<u>400만원초과</u>	<u>12만원+400만원초과</u>
<u>1,000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16</u>	<u>1천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10</u>
<u>1,000만원초과</u>	<u>108만원+1,000만원초과</u>	<u>1천만원초과</u>	<u>72만원+1천만원초과</u>
<u>2,500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27</u>	<u>4천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20</u>
<u>2,500만원초과</u>	<u>513만원+2,500만원초과</u>	<u>4천만원초과</u>	<u>672만원+4천만원초과</u>
<u>5,000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38</u>	<u>8천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30</u>
<u>5,000만원초과</u>	<u>1,463만원+5,000만원초과</u>	<u>8천만원초과</u>	<u>1천872만원+8천만원초과</u>
	<u>금액의 100분의 50</u>		<u>금액의 100분의 40</u>
제60조(신고납부 등)		제60조(신고납부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정 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 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후 <u>단신설&gt;</u>		③----- ----- ----- ----- -----. 이 경 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 을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서 공제할 수 있다.	

문서번호	세무13400-161
보존기간	3년
결재일자	2000. 1. 27.

기 안	세무과장	행정지원국장	부시장	시 장
1/26. 27. 김재현	+ 7- 1/26. 27. 김재현	기획감사담당관 김재현		
협 조	예산담당 김재현 기획감사담당관 김재현			

## 住民稅(個人均等割)稅率調整計劃

稅務課

## 住民稅(個人均等割)稅率調整計劃

우리시의 주민세(개인균등할) 세율에 대하여 '99년도 제37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99. 7. 24)한 바 세율이 도내 타시군에 비하여 낮게 인상되어 상향 조정 하고자 함.

### □ 根據法令(地方稅法 第176條)

-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 推進事項

- 주민세 세율 조정(안) 의회 제출 : '99. 5. 25
  - 동지역 : 4,500원
  - 읍면지역 : 3,000원
- 주민세 세율 의회 수정 의결 : '99. 7. 24(제37회 임시회)
  - 동지역 : 4,500 → 3,000원
  - 읍면지역 : 3,000 → 2,000원

### □ 調整의 必要性

- 주민세 인상을이 도 및 행정자치부 교부세 산정 및 인센티브 적용에 기초자료가 됨
- 인근 시군과 형평성 유지 및 우리시 시세입 증대
  - ※ 우리시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이 동일함 : 불임참조
    - 시 : 동 4,500원
    - 군 : 3,000원
    - 읍면 3,000원

□ 調整 計劃

- 동지역 : 4,500원(1,500원 인상)
- 읍면지역 : 3,000원(1,000원 인상)

□ 調整後 稅入 增加 豫想額

구 분	세대수	1999년도(조정전)		2000년도(조정후)		증가액 (천원)	비 고
		세율(원)	세액(천원)	세율(원)	세액(천원)		
계	38,467	-	101,241	-	151,862	50,621	
읍면	14,160	2,000	28,320	3,000	42,480	14,160	
동	24,307	3,000	72,921	4,500	109,382	36,461	

□ 向後 措置 計劃

- 입법예고 : 2000년 1월중
- 의회제출 : 2000년 2월중

## 주민세 세율 조정 현황

(단위 : 원)

구 분	현행세율	조정세율	추 진 사 항	비 고
포항시	1,800 (1,000)	4,500 (3,000)	'99. 5. 24 공포	
경주시	1,800 (1,000)	4,500 (3,000)	7. 14 "	
김천시	1,800 (1,000)	4,500 (3,000)	7. 8 "	
안동시	1,800 (1,000)	4,500 (3,000)	7. 30 "	
구마시	1,800 (1,000)	4,500 (3,000)	6. 27 "	
영주시	1,800 (1,000)	3,000 (2,000)	7. 30 "	수정의결(의회) ·동 : 4,500→3,000 ·읍면:3,000→2,000
영천시	1,800 (1,000)	4,500 (3,000)	7. 28 "	
상주시	1,800 (1,000)	4,500 (3,000)	7. 14 "	
문경시	1,800 (1,000)	4,500 (3,000)	5. 10 "	
경산시	1,800 (1,000)	4,500 (3,000)	6. 16 "	
군위군	1,000	3,000	4. 27 "	
의성군	1,000	3,000	5. 3 "	
청송군	1,000	3,000	5. 30 "	
영양군	1,000	3,000	5. 14 "	
영덕군	1,000	3,000	5. 21 "	
청도군	1,000	3,000	6. 14 "	
고령군	1,000	3,000	6. 17 "	
성준군	1,000	3,000	7. 6 "	
칠곡군	1,000	3,000	6. 15 "	
예천군	1,000	3,000	4. 10 "	
봉화군	1,000	3,000	5. 28 "	
울진군	1,000	3,000	4. 30 "	
울릉군	1,000	3,000	7. 30 "	

※ 팔호 내서는 통합시의 총전 군지역(읍·면)

## 관련법령(발췌) 목록

- 지방세법 : 제177조, 177조의2, 177조의4, 제196조의8,  
제196조의16내지 제196조의18, 제210조,  
제233조의6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81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39조3항
- 소득세법 : 제70조내지 제72조, 제81조, 제110조, 제115조
- 교통세법 :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
- 관세법 : 제142조의2

## 관 린 법 령(발췌)

### 【지방세법】

#### <제1절 주민세>

제177조(징수방법) ①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 ②<생 략>

제177조의2(신고납부) ①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1.~4.<생 략>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5. 1>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99. 12. 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미달한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법인세 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2001. 5. 1시행>

④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2001. 5. 1시행>

제177조의4(소득세 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 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 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01. 5. 1시행>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 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2001. 5. 1시행>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2001. 5. 1시행>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 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 할을 환부하여야 한다<2001. 5. 1시행>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2001.

#### 5. 1시행>

##### <제3절 자동차세>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군은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생략>

③제19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3절의2 주행세>

제196조의16(납세의무자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96조의17(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196조의18(신고납부 등) ①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주행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5일까지 시·군별 자동차세 징수세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4절 농지세>

제210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2만원+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72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672만원+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제5절 담배소비세>

제233조의6(신고납부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5절 담배소비세>

제181조(신고납부 및 안분기준등) ①법 제233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군별 산출세액을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월중 당해 시·군에서 매도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2. 전월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한 세액을

-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중 전 시·군지역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 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당해 시·군이 실제 받을 금액
    - 당해 시·군이 실제 받을 세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 ② 법 제233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납부세에 의하여 시·군별로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월중 각 시·군에서 소매인에게 매도된 외국산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 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2. 전월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제외한다)된 외국산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중 전 시·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 매도된 외국산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외국산제조담배에 대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180조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④ 법 제233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제조담배는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신고납부하였거나 신고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고, 착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액 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⑥ <생략>

제71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2조(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는 그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⑬ <생략>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납세자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5조(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①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⑤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교통세법】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④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8조(납부)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세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③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41조의2(신고의수리) ①관세장은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수리전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징수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할 때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

3. 납부할 관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4. 담보제공을 받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정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에는 운수기관·관세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17호(2000. 1. 29) 게재
- 예고내용 : 별첨과 같음
- 예고기간 : 2000. 1. 31 ~ 2000. 2. 1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의안검토보고서

### 1. 의안

- 의안번호 : 제109호
- 의안명 : 영주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2. 개정이유

지방세수 확보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조정하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주행세 신설(안 제3조 및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

- 지방세법 제196조의16내지 제196조의18 등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 규정

#### 나.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제9조)

-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삭제되어 관련조항 개정

#### 다. 주민세 균등할 세율조정(안 제20조제1항)

-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동지역 : 3,000원 → 4,500원
  - 읍면지역 : 2,000원 → 3,000원

#### 라. 주민세 소득세 할 신고납부방법 개선(안 제21조, 제22조의2)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77조의4의 규정(주민세 소득세 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이 개정되어 2001. 5. 1부터 시행되어 관련조항개정

#### 마. 자동차세 일 할계산 규정 개선(안 제39조)

- 자동차가 매매될 경우 양수자가 소유기간에 따라 일 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 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96조의8의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 개정

- 자동차세 일 할계산시 소액부정수 금액 상향조정  
1,000원 미만 → 2,000원 미만
- 바. 농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안 제46조)
  - 지방세법 제210조의 농지세 세율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 사.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안 제60조)
  - 지방세법 제233조의6 제3항 후단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아.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 신설(안 부칙 제3항)
  -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이 지방세법 부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

#### 4. 검토의견

영주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주행세 신설(안 제3조 및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
  - 조례제3조제2항중 제4호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주행세 납세의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휘발유, 경유 등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에 부과하며,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하고 신고납부는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 납입함.
-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개정(안 제9조)
  -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삭제되어 관련조항 개정
    - 시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구분
- 주민세 균등할 세율인상(안 제20조1항)
  -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 동지역 3,000원 → 4,500원,
    - 읍면지역 2,000원 → 3,000원
- 주민세 소득세활 신고납부방법 개선(안 제21조제4항, 제22조의2 신설)
  - 법 제177조의2, 제177조의4 규정(주민세 소득활의 신고 납부 및 부과고지)이 개정되어 2001. 5. 1부터 시행되어 관련조항 개정
- 자동차세 일 할계산 규정개선(안 제39조)

-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이 전 등록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 징수
  - 소액부징수 인상 : 1,000원 → 2,000원 미만
- 농지세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안 제46조)
  - 지방세법 제210조 농지세 세율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안 제60조)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
-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신설(안 부칙 제3항)
  -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 규정이 지방세법 부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 '99. 12. 28 법률제6060호로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 주민세 균등할의 인상조정은 '99년 7월 제37회 임시회에 이어 금회50% 인상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은 과증되나 지방세입 증대 및 도·관내 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00. 4.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